

## 「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5일 이은미 의원이 발의하고, 2022년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### 1. 제안이유

「대한민국헌법」 제10조 “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”를 근거로 하여, 국가인권위원회 「인권 기본조례」 제정 권고(2022.5.4.)를 따른 것으로 평창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협력 노력

(안 제3조~제4조)

나.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(안 제6조)

다. 인권교육 증진 활동 지원 사항 및 인권지수 개발사항(안 제7조~제9조)

라. 인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6조)

### 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평창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그 방안을 모색 및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.

○ 또한, 다른 지역에 비해 강원지역의 인권 행정에 관한 관심과

제도화 수준이 낮은 편이며, 유기적인 인권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

※ 강원도 내 인권조례는 5곳(춘천, 태백, 영월, 동해, 원주)이며, 제정률 27.8%(전국 42%)임.

○ 검토 결과,

제정에 따른 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